

토양오염우려기준(제1조의5 관련)

| 물 질                | 오염 기준<br>(단위: mg/kg.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-TEQ/g)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1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지역   | 3지역   |
| 1. 카드뮴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| 60    |
| 2. 구리   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| 2,000 |
| 3. 비소   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| 200   |
| 4. 수은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| 20    |
| 5. 납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0   | 700   |
| 6. 6가크롬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| 40    |
| 7. 아연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0   | 2,000 |
| 8. 니켈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| 500   |
| 9. 불소              | 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300 | 2,000 |
| 10. 유기인화합물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| 30    |
| 11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| 12    |
| 12. 시안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| 120   |
| 13. 페놀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| 20    |
| 14. 벤젠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| 3     |
| 15. 톨루엔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| 60    |
| 16. 에틸벤젠           |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| 340   |
| 17. 크실렌            |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| 45    |
| 18.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 |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0   | 2,000 |
| 19.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| 40    |
| 2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|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| 25    |
| 21. 벤조(a)피렌        | 0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| 7     |
| 22. 1,2-디클로로에탄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| 70    |
| 23. 다이옥신(퓨란을 포함한다) | 1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0   | 1,000 |

※ 비고

- 1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광천지·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)·학교용지·구거(溝渠)·양어장·공원·사적지·묘지인 지역과 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(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 부지

2. 2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임야·염전·대(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)·창고용지·하천·유지·수도용지·체육용지·유원지·종교용지 및 잡종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)인 지역
3. 3지역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잡종지(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)인 지역과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·군사시설 부지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.
5. 벤조(a)피렌 항목은 제한물질·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반침목을 사용한 지역(예: 철도용지, 공원, 공장용지 및 하천 등)에만 적용한다.
6. 법 제11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
 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
  - 나.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「건축법」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
  - 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
7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.